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0. 18. (화) 10:00~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2
2.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년 10월 04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년 10월 0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다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①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함
- ②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목적 및 추진방향, 식재수종,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③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가로수관련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 ④ 가로수 수종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은행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 ⑤ 도로, 도로시설물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와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등

- ⑥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관리
- ⑥ 식재에 따른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관련 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별지서식)
- ⑦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 작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① 안 제1조~제2조(목적, 적용범위)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② 안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는 군수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③ 안 제4조~제8조(가로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수당)는 가로수위원회의 설치방법 및 기능, 존속기한과 임기, 그리고 회의와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④ 안 제9조(수종의 선정)는 가로수의 식재수종을 망라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⑤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한 조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⑥ 안 제11조~제12조(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군수 외의 자가 가로

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할 시 비용부담 방법과 그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명시한 것으로서 필요사항으로 판단됨.

⑦ 안 제15조~제18조(점검, 주민참여, 보고, 관리대장)는 가로수의 연 1회 이상 점검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⑧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년 10월 04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년 10월 0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① 군의회의 주문사항과 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② 군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① 제명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로 함
- ② 피해농업인의 용어 개정(안 제2조제5호)
 - 피해농업인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서
⇒ “군 내에서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한 농업인”으로 변경
 - ※ 도 권고사항 반영
- ③ 농작물·인명피해 보상요건을 통합하고 완화함(안 제3조)
 - 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함
 - 최저 피해면적 기준: 330제곱미터 이상 ⇒ 삭제
 - 최저 피해금액 기준: 30만원 이상 ⇒ 삭제
 - ※ 군의회 주문사항 반영 및 도 권고사항 반영

- ④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4항)
 - 농작물 피해: 최대 500만원
 - 피해보상액 산정 곤란시 피해보상액 조정
 - 인명 피해: 최대 50만원
- 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4.4시행)의 개정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함
 -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함(현행조례 제8조, 제12조)
 -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함(현행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⑥ 별지서식에 근거 조례명 및 용어 순화, 구비서류 등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권고사항과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를 위하여

나.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① 안 제1장(총칙)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② 안 제2장(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피해액 산정기준과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그리고 피해보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③ 안 제3장(인명피해 보상)은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과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④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